

	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규정	문서번호	MSU-
		제정일자	2013. 7. 1.
		최종개정일자	2015. 11. 10.
		담당부서	교육혁신처 교수학습지원센터

제1장 총 칙

제1조(명칭) 본 센터는 목포과학대학교(이하 "대학"이라 하다) 교수학습지원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라 한다.

제2조(목적) 본 센터는 교수·학습을 연구, 개발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전문 직업인 양성을 위한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교육품질과 전문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사업) 센터는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교수·학습방법의 개발
2. 학습능력 신장을 위한 학습자 지원
3. 교육 매체, 강의 콘텐츠 제작 및 지원
4. <삭제><개정 2013.11.25>
5. 강의평가에 대한 연구
6. 기타 교수학습 관련 제반사업
7. <개정 2013.11.25><삭제 2015.11.10>
8. E-Learning 시스템 구축 및 운영<개정 2013.11.25>
9. 기초학습 능력 향상 관련 제반 사항<개정 2015.11.10>

제2장 조 직

제4조(조직) ① 센터에는 센터장, 전문연구위원, 연구위원, 직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.

- ② 전문연구위원은 대학 전임교원 중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- ③ 연구위원 및 직원·조교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세부사업별로 구성할 수 있다.
- ④ 필요에 따라 외래전문 연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<개정 2013.11.25><개정 2015.11.10>

제3장 운영위원회

제5조(운영위원회구성)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수학습지원 센터운영위원회를 둔다.

- ② 위원회는 센터장, 교육혁신처장, 교무입학처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, 당연직위원은 교육혁신처장, 교무입학처장이 되며,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은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으며,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한다.

⑤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위촉한다.

제6조(기능)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센터의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 수립
2.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심의
3. 기타 센터운영에 관한 주요사항

제7조(소집 및 의결) ①위원회는 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.

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.